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89
----------	-------

발의연월일 : 2026. 2. 2.

발 의 자 : 김미애 · 박상웅 · 서명옥
주호영 · 김도읍 · 유용원
송석준 · 김정재 · 김소희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전·월세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누적된 자산과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저축 및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 우리나라의 통계 등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과부담이라고 보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비에 대한 보조, 공공주택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청년층”을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법률 제21184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청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주거비에 대한 보조
2.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산정 방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 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 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 <u>청년층</u> · 지원대상아동(「아 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 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 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 되도록 할 것	2. ----- ----- ----- ----- <u>청년</u> (「 <u>청년기본법</u> 」 제3조제1호 에 따른 <u>청년</u> 을 말한다. 이하 <u>같다</u>)----- ----- ----- ----- ----- -----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184호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21184호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u><신 설></u>	<u>제16조의3(청년 지원) ① 국가 및</u>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주거비에 대한 보조

2.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산정 방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